

광주지방법원 2023. 4. 7 선고 2022가단5522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맥, 담당변호사 권오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4. 7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임야 992㎡에 관하여 2022. 6. 23.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을 34,953,4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4,953,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[원고는 가액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, 가액배상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한다(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)].

판사 이제승

별지